

## 환기구 등 구조물 건축구조기준 반영

- ① 지하주차장의 환기구 등도 건축물의 일부임. 마찬가지로 채광창, 장비반입구 등도 건축물의 일부임

건축법

제2조(정의)

2. "건축물"이란 토지에 정착(定着)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, 지하나 고가(高架)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·공연장·점포·차고·창고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- ②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하중, 적재하중 등 각종 하중에 안전하여야 하므로, 환기구도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하중을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함

건축법

제48조(구조내력 등)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, 적재(積載)하중, 적설(積雪)하중, 풍압, 지진, 그 밖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.

건축구조기준

0104.1.1 안전성

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는 유효적절한 구조계획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 전체가 이 기준 제3장(설계하중)의 규정에 의한 각종 하중에 대하여 이 기준 제4장 내지 제8장의 규정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한다.

- ③ 지상에 노출된 환기구의 덮개에는 유지관리 등 활용측면에서 활하중이 예상되므로, 건축구조기준 중 용도·기능적으로 유사한 지붕 기준을 적용하거나,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함

\* 건축구조기준상 하중기준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환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님

□ 건축구조기준

<표 0303.2.1> 기본등분포활하중(단위 : kN/m<sup>2</sup>)

용 도	구조물의 부분	활하중	비고
지 붕	가. 점유·사용하지 않는 지붕(지붕활하중)	1.0	유지관리 인력, 장비, 화단 적재 등 예상시
	나. 산책로 용도	3.0	보도면에 설치 (산책하는 사람의 하중만 예상되는 경우)
	다. 정원 및 집회 용도	5.0	보도면에 설치 (사람의 집중, 물건 적치, 차량 진입 등 예상시)
	라. 헬리콥터 이착륙장	5.0	

0303.1 일반사항

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용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하중을 산정하여야 하며,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